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001)

목 차

| | 문 단 |
|--|-----------|
| 요 약 | 4 |
| I. 서 문 | 1 - 8 |
| II. 무력충돌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준..... | 9 - 40 |
| III. 미래의 방향과 미해결된 문제들 | 41- 43 |
| IV. 여성에 대한 폭력과 무력충돌에 관련된 일반 문제들(1997-2000) | 44- 66 |
| V. 무력충돌시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들(1997-2000) | 67-113 |
| A. 아프가니스탄 | 68- 71 |
| B. 부룬디 | 72- 73 |
| C. 콜롬비아 | 74- 75 |
| D. 콩고공화국..... | 76 - 78 |
| E. 동티모르 | 79 - 81 |
| F, 유고연방(코소보) | 82 - 84 |
| G. 인도 | 85 - 88 |
| H. 인도네시아/서티모르 | 89 - 91 |
| I. 일본 :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와 관련한 전개 | 92 - 96 |
| J. 미얀마 | 97 - 99 |
| K. 러시아연방(체첸) | 100- 103 |
| L. 시에라리온 | 104 - 108 |
| M. 스리랑카 | 109 - 113 |
| VI. 권고 | 14- 135 |
| A. 국제사회 | 114- 123 |
| B. 국가 | 124- 135 |

I. 일본 :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와 관련한 전개

92. 일본 정부는 비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완곡한 표현으로 “위안부”라 호칭되는 성노예제를 조직하였다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특별보고관이 1996년 작성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이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특별보고관의 ‘무력 충돌 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에 관한 최종보고서 부록에 간략히 서술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93.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금인 국민 기금(Asian Women’s Fund)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에 의한 보상 사업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일본수상의 사과 서한과 함께 위로금 2백만엔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70명의 전 위안부가 위로금을 수령하였다. 국민 기금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여성폭력에 의해 피해를 본 여성과 노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업도 수행한다.

94. 최근 몇몇 성노예 피해자가 일본 법정에 제소하였으며 이들 사건 중 대부분이 계류 중이다.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의 결과는 일관된 것이 아니다.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지방법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는 세 명의 “위안부”가 낸 소송에 대하여 이들이 성노예로 잡혀있었고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각각에게 300,000엔 (미화 2,300달러)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이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부작위는 “일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일본 정부 양측 모두 히로시마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이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95. 반면에 도쿄지방법재판소는 46명의 필리핀 전 “위안부”가 제소한 사건을 1998년 10월 9일에 기각하였으며 네덜란드 전 “위안부”가 소송한 사건도 1998년 11월 30일에 기각하였다. 필리핀 여성들이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2000년 12월 6일 도쿄고등법원이 기각하였다. 네덜란드 여성의 항소심은 도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사한 경우로 일본고등재판소(Japanese High Court of Justice)는 한국인 전 “위안부”의 제소를 2000년 11월 30일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상 원고는 개인으로서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재일 한국인들이 전쟁의 피해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1985년에 만료되었다고 판결하였다. 2000년 9월 15명의 “위안부”들은 워싱턴지방법원에 자신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96. 2000년 12월 여성단체들이 일본 “위안부”제도의 희생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배상거부와 범죄자의 면책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도쿄법정2000)을 개최했다. 한국,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위안부”들의 상세한 증거가 수집되어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다. 국제검사는 저명한 국제법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단에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단의 법정 판결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가해자를 처벌할 절차를 세울 것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VI. 권고

국제사회

114. 유엔은 윈드후크선언(Windhoek Declaration), ‘다각적 평화지원작전에서 성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나미비아 행동강령(Namibia Plan of Action on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 Multidimens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 그리고 그 밖에 다수의 유엔 성명서, 결의안, 판결문에 포함된 권고안에 따라 유엔의 작전 현장(field-base operation)에 종사하는 군감시관(military observer), 경찰, 평화유지군, 인권 및 인도주의 업무 관련 직원을 비롯한 유엔 내의 모든 기구 및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단과 특사로서 여성대표의 비율을 향상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평화유지 작전부(Depart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 내에 성문제 전담부서를 두고, 고위 성문제 자문관을 임명하고, 또한 모든 작전 현장에 고위 성문제 자문관과 아동보호 자문관을 임명하며, 성문제 인지 훈련을 제공할 것;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 임무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분배하는 중요한 직위에 특별 대표로서의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것;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위원회(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의 보고서 (브라히미(Brahimi) 보고서) (A/55/305-S/2000/809)에 제안된 통합임무업무단에 성문제 자문관을 포함시킬 것.

115. 유엔은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히 현장 작전(field operation) 지역, 평화유지 활동지역, 군대와 경찰병력 주둔 지역과 같이 여성과 소녀의 신체적 안전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즉각적으로 성관점의 주류화를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주류화는 유엔의 주요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뿐 아니라 이 보고서에 설명된 여성과 소녀의 특수한 문제에 유엔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평화유지 작전은 모든 형태의 성폭력과 유괴, 강제매춘, 인신매매를 비롯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 감시, 보고하도록 명확한 임무를 명시할 것;

뉴욕에 본부를 둔 평화유지 작전부 직원과 현장의 모든 평화유지군에게 성문제에 관한 통합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국제 기준, 특히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한 평화유지군에 대한 조치와 처벌 방식을 고안할 것. 평화유지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평화유지군을 재판할 특별 임시 재판소를 설치할 것.

116. 유엔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범죄를 비롯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평화유지군은 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유지 작전에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은 행동규범에 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그 결과는 사무총장의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무력 충돌 상황의 아동에 대한 그라카 마셀(Graça Machel)의 2000년 9월 보고서 권고안에 이어 특별보고관도 모든 평화 지원 활동에 고충처리원(ombudsperson) 또는 기타 처벌과 감시 기제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117. 유엔은 여성이 모든 정전협상과 평화협상에 참여하고 성문제가 이러한 과정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지역의 여성 NGO가 평화협상에 관여하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118. 군제대, 재할, 재통합 및 전후 재건 프로그램뿐 아니라 본국 송환 및 정착 계획을 세울 때 여성과 소녀의 전쟁 경험과 이들의 전후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재할 프로그램은 종종 성폭력과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을 고려하고 성폭력 생존자들의 특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전 여성전투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과 다른 여성 가구주의 안전과 생활 수단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9.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2000)도 요청한 바와 같이 여성과 소녀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여성에 대한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120. 무력 충돌 상황의 아동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2000년 7월의 보고서에 작성된 중요한 결의안 (A/55/163-S/2000/712)에 주목하며, 지원과 보호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쟁이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시 소녀를 보호하고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121. 국제사회는 특수하게 국내난민(IDP)의 보호와 지원을 수임사항으로 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거나 적어도 중앙에 위치한 조정 기구를 마련하여 사무총장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이 제안한 대로 국제사회가 국내난민의 문제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2. 이미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난민과 국내난민 수용소를 고안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용소의 전기시설 개선, 구조 변경, 경비원의 증가, 장작 제공, 안전한 장소에 수도와 화장실 설치, 여성 경비원 고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23. 유엔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게 국제인도주의법상 책임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B. 국가

124. 모든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헌장(Rome Statute), 무력 충돌 시 아동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금지 협정 182조(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No. 18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비롯한 관련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이들에 포함된 법적 기준을 완전히 존중하고 이러한 협약을 위반한 자는 책임을 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125. 모든 정부와 국가가 아닌 행위자는 국내난민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준수하며, 이를 집행해야 한다.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의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국내의 인도주의 단체가 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26. 국가는 특히 무장 단체의 침투로부터 난민과 국내난민 수용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강간 및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분쟁으로 인한 여성과 어린이 난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127. 국가는 강간 또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기타 성폭력을 비롯한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정부나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국가는 자신의 영토를 이용해 무장 단체가 유괴한 여성과 소녀를 억류하거나 강제매춘 또는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8. 국가는 자국의 군대, 민간경찰,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지침을 비롯하여 성인지적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군대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수칙을 고안하고 집행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29. 회원국은 군감시관, 경찰, 평화유지군, 인권 및 인도주의 업무관련 직원으로서 파견근무가 가능한 국민 명단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30. 회원국은 평화유지, 인도주의적 지원, 전후 재활 및 재건 활동을 하는 주요 유엔 기구를 위해 올바른 성인지적 훈련과 충분한 수의 고위 성문제 자문관 및 아동보호관을 확보하도록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31. 재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정부는 사업의 기획에 여성과 소녀의 전쟁 경험과 특수한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특히 무력 충돌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강간당한 소녀와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료와 트라우마 상담을 비롯한 성인지적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132. 현재 분쟁 상태이거나 전후 상태인 국가는 모든 화해와 재건 활동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고 재활, 통합, 전후 재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송환과 재정착 사업을 기획할 때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고 그들의 특수한 전쟁 경험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33. 국가는 성별 구분된 자료와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국내제도를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134. 무력 충돌의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과 여성 단체가 평화 정착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에 여성의 요구와 이익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5. 전쟁범죄 및 인권 유린과 관련된 처벌 기구는 여성폭력 사건이 기소되고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 모든 평화협상은 이러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995년 일본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민 기금(Asian Women's Fund)은 전 위안부를 위한 민간기금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NGO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일이며

정부가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 기금에서 제공하는 돈을 받기를 거부했다. 피해자들은 대신 자신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공식적 사죄를 요구했다.

전시하 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방문 보고서 (E/CN.4/1996/53/Add.1 and Corr.1) sect. IX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E/CN.4/Sub.2/1998/13), 부록

무력 충돌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맥두갈씨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개정판에 언급됨, para. 75

같은 책에 언급됨, para. 76

같은 책

“일본 법정, 한국 위안부의 항소를 기각”, 코리아타임즈(Korea Times), 2000년 12월 1일

소지영, “일본의 전시 성노예제 범죄에 대한 민간 법정 소환”, 코리아타임즈(Korea Times), 2000년 11월 9일